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무조정실장)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 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 신설·강화 시 자체심사토록 하고, 규제 특례 부여 재심의 절차 및 부가조건 변경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 수,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 임기, 해촉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의2)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심사 시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후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안 제8조)

규제 재검토 시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재검토 실시 절차를 정하고, 결과보고서 보존 기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결과보고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규제 특례 관계법률(안 제13조의2)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규정함

마. 규제 특례 심의기한 등(안 제13조의3)

규제 특례 심의기한은 90일로 하되, 기한 내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심의(안 제13조의4)

재심의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재심의 시 규제 특례를 신청한 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안 제13조의5)

규제 특례 내용·조건 변경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아.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6)

규제 특례 관계법률의 법령정비계획 등을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자.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2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등록, 규제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차.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안 제3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

여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 규제에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소관 규제에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관계 공무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또는 소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 향후 정비계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 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 도래시까지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부터 5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중전의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 후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보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산업융합촉진법」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규제 특례 심의기한 등)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기한내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4(재심의)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통지한 부결 사유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부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심의와 관련한 절차는 법 제19조의3제5항을 준용하되 재심의 시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6(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① 제13조의2의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불가한 경우 또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

우 그 사유

4. 향후 관련 법령정비계획

5. 기타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은 법령정비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의2의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가 부여되거나 임시허가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시허가 승인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른 규제 등록 및 공표, 제12조에 따른 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

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등에 따른 규제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

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
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u>1.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u> <u>2.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u> <u>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의 심사에 관한 사항</u> <u>4.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공</u>

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관계 공무원
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또는 소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
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u>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u>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u>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신 설></u>	<u>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⑦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u> <u>제7조의2(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u>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u> 1. <u>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u> 2. <u>법 제5조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u>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 후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보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u>
--	---

<신 설>

<신 설>

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결과를 포
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
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 향후 정비계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
다.

제8조 · 제8조의2 (생략)

<신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 도래시까지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부터 5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 제8조의3 (현행 제8조 및 제8조의2와 같음)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산업융합촉진법」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

<신 설>

<신 설>

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규제 특례 심의기한 등)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기한내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4(재심의)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통지한 부결 사유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부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심 의와 관련한 절차는 법 제19조의3제5항을 준용하되 재심 의시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

<신 설>

<신 설>

청한 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6(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① 제13조의2의 규제 특

레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 향후 관련 법령정비계획

5. 기타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은 법령정비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의2의 규제 특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가 부여되거나 임시허가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시허가 승인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른 규제 등록 및 공표, 제12조에 따른 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

러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지방 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 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연 락 처	(044) 200 - 2429